

第243回国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0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0月13日(月)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간사선임의견
2. 지방자치단체장사퇴시한위헌결정에따른사퇴시기결정의견

審査된案件

2. 지방자치단체장사퇴시한위헌결정에따른사퇴시기결정의견 ..... 1
1. 간사선임의견 ..... 2
- o 간사(辛基南)인사 ..... 2

(10시58분 개의)

○**委員長 睦堯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田春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睦堯相** 그러면 새로 보임해 오신 辛基南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지요.

○**辛基南 委員** 정치개혁이 국민의 여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선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睦堯相**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견을 상정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것 같아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사퇴시한위헌결정에따른사퇴시기결정의견

(11시00분)

○**委員長 睦堯相** 의결할 사안은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사퇴시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관한 의견조율을 해보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사퇴시한위헌결정에따른사퇴시기결정의견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에 대해서는 9월 26일 제5차 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 각 당에 9월 30일까지 당의 의견을 조정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내달라는 촉구공문을 보내기로 의결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국정감사기간 중이라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어느 당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보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개혁특위가 그 공문이 오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10월 13일이니까 내년 4월 15일 총선을 기준하면 딱 6개월 전입니다. 6개월에서 이틀이 빠지는데 가령 사퇴시한을 6개월로 정한다면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퇴시한을 어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현재의 결정취지에도 합당한 것인가를 여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먼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辛基南 위원님 말씀하세요.

○**辛基南 委員**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헌선언이 되었고 또 위헌결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한이 10월 연제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물론 단축한다는 전제만 서면 그 이후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빨리 각 당에서 당론화해서 개혁특위에서 해야 되겠고요.

저는 단체장이 다른 공무원과 다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 60일인데 단체장도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별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180일은 너무 가혹하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지적했듯이 행정공백이 너무 오래 생기기 되는 단점도 있고 또 개인으로 보더라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4월과 10월 두 차례 있게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전에 사퇴해야 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미 중앙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해서 90일 내지 12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을 낸 적이 있고 해서 꼭 60일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행정공백이 지나치게 길지 않고 가혹하지 않은 내용으로 저희가 빨리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睦堯相** 기왕 말씀하신 김에 辛基南 위원님 생각으로는 몇 달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辛基南 委員** 저희 당론도 강구 중인데요. 저희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당론을 결정하려고 합니다마는 90일 아니면 120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睦堯相**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沈揆喆 위원님.

○**沈揆喆 委員** 沈揆喆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의 결정이 애초에 이런 취지를 둔, 다른 공무원과 달리 단체장의 경우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단체장의 경우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단체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가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간문제는 아직 제가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궐선거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느 때 사퇴하느냐에 따라서 보궐선거

시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보궐선거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기, 따라서 그로 인한 행정공백을 덜 초래하는 기간을 택해서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 2개월로 되어 있고 단체장은 6개월로 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니만큼, 또 우리가 다른 공무원과의 다른 특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의 경우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단체장의 일을 보는 자체가 선거운동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리면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로 타협을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睦堯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뒤로 미뤘는데 이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1. 간사선임의건

(11시06분)

○**委員長 睦堯相**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참여통합신당주비위원회가 새로운 교섭단체로 구성됨에 따라 국회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간사를 새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참여통합신당주비위원회에서는 새로 보임해 오신 辛基南 위원님을 간사로 내정해서 알려왔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辛基南 위원님을 국민참여통합신당주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간사(辛基南)인사

○**委員長 睦堯相** 辛基南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었으니까 다시 인사하시지요.

○**辛基南 委員** 제가 과분하게도 국민참여통합신당 몫의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는데요. 우리 당의 위원도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康奉均

위원님께서 새로 오셨고 金宅起 위원님도 계시고 千正培 위원님은 전부터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익숙하실 것입니다만, 저는 여기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선거법에 대해서 시급한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일정을 당겨서 조속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지역구도 극복과 정치자금 투명화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을 위해서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 문제, 또 선거구 확정문제가 어느 정도 전망이 서야 모든 정치 일정이 순조롭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당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론을 확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교섭단체에서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너무 늦다고 질타를 당한다든지 또는 정치일정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빨리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睦堯相 그러면 아까 논의하다가 중단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에 관해서 의견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金學元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지난번에 사퇴시한을 180일로 정하게 된 취지에 관해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부행위를 6개월 전에 금지한 취지는 기부행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그 활동, 그 역무제공 자체는 바로 무형적인 기부행위와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6개월로 제한규정을 두자는 취지로 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잠깐 훑어보니까 어떤 부분에도 이러한 취지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이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적인 형평성의 이론만 가지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미 현재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규정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경우에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2개월 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것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120일로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睦堯相 또 말씀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석 달 아니면 넉 달로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여러 위원님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인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 사퇴시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 선거구확정문제라든지 기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만 분리해서 우선 이 관계법을 개정해 놓고 다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 가면서 또 손질할 것인지에 관해서 의견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 문제는, 물론 다른 법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120일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단체장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상당히 긴박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빨리 결정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시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睦堯相 辛基南 위원님 말씀하세요.

○辛基南 委員 저도 결론은 동감입니다.

6개월이라면 10월 18일까지인데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명분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번으로 삼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정개특위에서 만약 논의가 안 된다면 행자위에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급하니까, 10월 18일에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행자위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행자위 국감에서도 선관위에서 법안을 내시오, 그러면 정개특위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행자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당론

을 오늘, 내일이라도 정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陸堯相**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의 생각인데 내일과 모레, 양일 간에 우리 정개특위의 4당 간사님들이 회동을 하셔서 대체적인 의견조율을 마쳐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선거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개정안을 근거로 오는 16일에 본회의가 끝난 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그 개정안을 처리할까 하는 생각이니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의결로 처리할 수는 없어서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金容鈞 委員**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委員長 陸堯相** 말씀하세요.

○**金容鈞 委員** 조금 전에 사퇴시한 문제가 10월 18일까지는 어떻게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겠다는 사안이라면 그 결론은 본회의 결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7일이나 16일에 정개특위를 다시 열어가지고는 이것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金學元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이라는 것은 이미 위헌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18일 전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金容鈞 委員**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8일 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 그 이야기는 본회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委員長 陸堯相** 6개월 사퇴시한이 위헌이라고 결정 났기 때문에 그 6개월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단축을 해서 조정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그렇게……

○**金容鈞 委員** 그러나 6개월 자체가 주문으로서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개월29일은 합헌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辛基南 委員**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물론 그렇습니다. 6개월은 이미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단축되어서 10월 18일까지 안 하면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명분이 있고 또 체면이 있어서—지금까지 진작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그래서 저는 최소한 18일 이전에는 저희 특위 내에서 결론을 내려서 가시적인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委員長 陸堯相** 그러니까 위원장인 저의 생각으로는 16일에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 개정안을 의결 처리하고 그날로 법사위에 회부해서 법사위에서 처리를 하면 17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내일 4당 간사님들이 모여서서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해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늦어도 15일에는 선거법소위원회를 열어서 개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6일 본회의가 끝난 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양해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 위임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선거법소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배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소위원회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 배정을 했습니다.

○**全在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陸堯相** 말씀하세요.

○**全在姬 委員**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정치개혁특위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정치자금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면 저를 제가 하고 싶은 위원회에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陸堯相** 그러면 鄭義和 위원님 하고 바꾸실까요? 鄭義和 위원님이 수석부총무가 돼서 바쁘시니까……

○**全在姬 委員**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陸堯相** 나중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양해를 좀 구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 4당 간사님들이 회동을 하셔서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레쯤 선거법소위원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16일 본회의 끝난 직후 개의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 처리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鈞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특별히 유념하셔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容鈞 委員 소위원회 위원장을 각 당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陸堯相 다음에 다른 분한테 바통을 넘기시더라도 우선은 이 문제에 관한한 金容鈞 위원님이 소위원회장이시니까 책임지고 소집해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당의 의견을 명확하게 보내온 바가 없어서 정개특위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내에 구성되어 있는 선거법소위원회가 각 당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진전을 시켜줬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金學元 委員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의장실에서 4당 원내총무와 함께 총무회담을 열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요점은 새로 통합신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인 통합신당에서 선거구획정위원으로 1명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당 총무들끼리 합의하기를 원래 민간인을 국회의원보다 1명이라도 더 많이 넣는다는 본래의 취지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당 1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국회의원수가 4명이 되니까 민간인 베이스에서 1명을 더 넣어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을 지금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 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본회의 통과를 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陸堯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정개특위에서 넘겨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선거구 인구기준 하한선을 얼마로 하고 상한선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가이드라

인을 빨리 정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겨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시중에서는 우리 정개특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고 도대체 선거구획정 문제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 특히 정치신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원망의 눈초리로 우리 정개특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기를 띠어서 빨리 진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金容鈞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陸堯相 말씀하십시오.

○金容鈞 委員 지금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획정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또 자치단체장의 사퇴시기가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저에는 헌법이 이야기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엇이며 국가 질서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고 하니 국회는 국회의 권한으로서 입법을 하고 법원은 이것이 법이 무엇이나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매우 자제력을 행사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애당초 상임재판관 6명, 비상임재판관 3명으로 해서 구성했다가 헌법재판소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서 9명의 상임재판관으로 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많은 시중 사건에 사사건건 개입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답지 못한 판결을 하고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4 대 1 인구기준 이것은 1997년 제2기 헌법재판관들이 확정시켜 놓은 부분들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헌법상의 정치적 평등권을 보는 시각이 제3기 재판관이 와가지고 3 대 1 이어야 평등권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말하자면 재판권을 남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입법부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킨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의 오랜 논의와 숙고 끝

에 만들어진 그 단체장의 사퇴시한 문제를 구두 변론 한 번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또 위헌이라고 선고를 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는 새만금사업이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지방법원에서 공사 중지처분을 해 가지고 행정권을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연 이것이 법원의 권한이며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회의 권한이나 하는 데 대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외국에 가서 연구해 본바 영국과 같이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국가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5 대 1 인구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가니까 노르웨이에서는 국토는 넓고 인구가 도시로 몰려있기 때문에 면적과 인구를 같이 고려한 병산제를 채택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실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잦은 위헌판결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에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권이 있으니 재판하고 나면 유효하다, 법원이 재판권 있으니 판결나면 유효하다…… 좋습니다, 국회에서 입법권이 있으니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것이 또 유효하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 권한을 남용하기 시작하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내가 행정권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남용을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이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안건의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陸堯相 威承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威承熙 委員 金容鈞 위원님의 법 논리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金學元 위원께서 통합신당 1명 추가되는 얘기를 언급하신 것도 일면적으로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통합신당이면 통합신당대로 내 뜻을 찾아야 되겠다, 나도 교섭단체인데 나는 왜 대표성이 없나…… 다 좋은 얘기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쨌든 재신임이라는 것이

정권의 부도덕성 또는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국정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그것이 설사 재신임이 됐다 해서 부도덕성 또는 범죄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없던 리더십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재신임에 연결되어야 하는지 저는 그런 것에 의아심을 가지면서도 대통령 시정연설 중에 가장 공감을 느낀 부분이 정치개혁 부분이었습니다.

선거제도, 말하자면 지역구도 속에서의 정치제도는 싸움만 있을 뿐이지 원천적으로 온전한 정책대결이라는 것이 있기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 또 돈을 쓰는 선거 속에서 어떻게 깨끗한 선거가 되며 어떻게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에 저는 100% 공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과 연계시켜서 대통령이 재신임까지 물겠다고 하는 마당이고 또 총선이 곧 다가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개혁특위가, 벌써 제가 서너 번째 특위위원이 되고 와서 보는데 결론 없이 그냥 몇 마디씩 떠들고 가고 지금도 슬금슬금 다 갑니다.

백 번 이래봐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대통령의 말 속에는 그 내용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많은 젊은 정치세력들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구시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래서 뭔가 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도는 별론으로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치개혁특위를 열면 토요일이면 토요일 아니면 저녁에라도 열어서 밤새워서라도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현안 다 올려놓고 밤새워서 좀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10분, 20분 와서 자기 주장이나 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권리나 찾겠다고 떠들고는 가 버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으니 밤새워하자고요. 일요일에는 국회 못 열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열면 어떻겠어요. 좀 밤 새워 합시다. 그래서 결론을 냅시다.

○委員長 陸堯相 잘 알겠습니다.

사실 공감을 합니다.

○辛基南 委員 저도 威承熙 위원님의 취지에 전

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이름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그냥 정치법심의특별위원회라면 각자 하면 되는 것이지 “개혁”자를 무엇하러 붙이고 “특별위원회”를 뭐하려고 만듭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고 무엇인가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개혁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와서는 자기 당의 보수적인 의견……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양보합니까? 양보 안 하지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나 대변하고 “우리 당은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이것밖에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무슨 특별위원회고 개혁이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원들보다는 개혁적인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당에 가서 싸워야 하고요. 심지어는 각 당에서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 본회의에 올려 버린단든지 하는 다부진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소위원회를 가동해서…… 보통 우리가 법 개정할 때 비교표를 만들 듯이 비교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안도 나와 있고 선관위안도 나와 있고 각 당에서 만든 안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비교표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사퇴시한 향이 있으면 여기는 한나라당, 여기는 무슨 당, 무슨 당, 여기는 시민단체안, 선관위안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조문 심사에 들어가 빨리빨리 해결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각 당에서 “이것은 우리 당의 당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소위원회에 언제까지 정해 오시오” 이렇게 해서 뭔가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비교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갖고 있어요. 오늘 의총에 가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부 다 반대예요. 그래서 당론으로 못하고 辛基南 개인 안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신당에서는 당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곧 갖다 바칠게요.

그래서 우리 개혁특위에서도 비교표를 만들어 각 당으로 하여금 당론을 가져오게 해서…… 우리는 다른 의원들하고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해야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니까?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하라는 것이고 지역구도 좀 해소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지요.

○委員長 陸堯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상당히 답답해요.

그동안에는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그런 대로 양해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국정감사도 끝났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결론을 맺어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辛基南 위원님, 새로 보임해 오셔서 간사까지 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出席委員(14人)

金容鈞 金龍學 金學元 陸堯相  
 朴柱宣 辛基南 沈揆喆 李揆澤  
 李秉錫 全甲吉 全在姬 鄭範九  
 千正培 咸承熙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李昌熙  
 전문위원 安秉玉

【報告事項】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政治改革特別	李康來		국민참여통합 신당주비위원회
		辛基南	〃

(10월 13일자)